

특약 변경 대비표

1. 약관명 : 「하나 청년도약계좌」 특약
2. 변경 시행일 : 2023년 08월 07일(월)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변경 내용 : 우대금리 제공 조건 변경

<신규 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제1조 적용범위 <생략> 제2조 가입대상 1.~5. <생략> 6.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<u>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합니다.</u> 제3조 신청 및 가입~제4조 예금과목 및 계약기간<생략> 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1.<생략> 2. 제1항에 따라 입금한 금액은 당월(입금월 초일부터 말일까지)에만 입금거래 정정(취소,변경 등)이 가능합니다. 제6조 이자 지급방법 <생략> 제7조 우대금리 <생략> 주7) 총급여 2,400만원 이하, <u>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,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·연금소득·종교인소득 1,600만원 이하인 경우</u> 제8조 세율의 적용 ~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 <생략> 제11조 정부기여금의 산정 1. <생략> 2. 제 1항에 따른 개인소득 구간은 총급여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, 연말정산한 사업소득·연금소득·종교인소득 중 제 10조 제 2항의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가장 낮게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제12조 재가입 등~제13조 기타 <생략>	제1조 적용범위 <좌동> 제2조 가입대상 1.~5. <좌동> 6.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<u>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에 한합니다.</u> 제3조 신청 및 가입~제4조 예금과목 및 계약기간<좌동> 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1. <좌동> 2. <u>원할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라 입금한 금액의 입금거래 정정(취소,변경 등)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</u> 제6조 이자 지급방법<좌동> 제7조 우대금리 <좌동> 주7) 총급여 2,400만원 이하, <u><삭제> 종합소득 1,600만원 이하 <삭제></u> 제8조세율의 적용 ~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 <좌동> 제11조 정부기여금의 산정 1. <좌동> 2. <u>본조 제1항의 개인소득 심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소득기준을 준용하며,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제 10조제2항의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합니다.</u> 제12조 재가입 등 ~ 제13조 기타 <좌동>	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